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816

발의연월일: 2024. 12. 20.

발 의 자:최은석·권성동·고동진

송언석 · 임이자 · 김승수

박덕흠 • 박충권 • 김성원

박정하 • 이종욱 • 김재섭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국경 간 거래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은행 중심의 규제와 사전신고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 어 왔음.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의 확산과 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국경 간 거래의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데 반해, 기존의 외환거래 규제 체계 가 변화된 환경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 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특히,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반의 외환서비스는 전통적 거래 방식 대비 저비용과 저규제의 특성을 가지며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제 및 모니터링 체계가 부재하여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 등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실제로 최근 4년간 외환범죄 적발금액 중 가상자산 관련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관련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변화된 외환거래 환경을 반영하고 국경 간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핀테크 기반 외환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정비, 개인 및 기업의 일상적 외환거래의 편의 증진, 외환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등에 관해 규율하여, 이를 통해 외환거래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 불법 거래를 방지하여 건전한 외환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9호마목 중 "법인의 국내에 있는 본점, 지점, 출장소, 그밖의 사무소(이하 이 목에서 "사무소"라 한다)"를 "국내에 있는 지점, 사무소(이하 이 목에서 "국내지사"라 한다)"로, "사무소 사이에"를 "본점 사이에"로, "사무소의"를 "국내지사의"로, "사무소를"을 "국내지사 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1.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가상자산의 종류 등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22. "가상자산사업자"란「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환업무의"를 "외국환업무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여행자수표의 매입"을 "여행자수표의 매입(다만,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 3. 전자적 방법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를 위한 지급 및 수 령, 결제 및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이하 "해외지급결제업"이 라 한다)
- 제9조의2 및 제1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2(가상자산이체업자의 등록 등)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체하는 업(이하 "가상자산이체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이체업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가상자산이체업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의4(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 제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 성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제1항제4호 중 "제8조제2항을"을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9조제3항에"를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2항에"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5.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제20조제6항 중 "한국은행총재"를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총재"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등에"를 ", 가상자산의 이체 등에"로, "국세청장"을 각각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외국환거래의"를 "외국환거래 등의"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수령에"를 "수령, 가상자산 이체에"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제1호 중 "제3항에"를 "제3항, 제9조의2제1항에"로, "외국환업무를"을 각각 "외국환업무 또는 가상자산이체업을"로, "제8조제4항에"를 "제8조제4항 또는 제9조의2제2항에"로 한다.

제29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

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8조제4항에"를 "제8조제4항 또는 제9조의2제2항에"로, "외국환업무를"을 "외국환업무 또는 가상자산이체업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	제3조(정의) ①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자본거래"란 다음 각 목의	19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마}
법인의 국내에 있는 본점,	국내에 있는 지점, 사무소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	(이하 이 목에서 "국내지
무소(이하 이 목에서 "사	사"라 한다)
<u>무소"라 한다)</u> 와 외국에	
있는 <u>사무소 사이에</u> 이루	<u>본점 사이에</u>
어지는 <u>사무소의</u> 설치・확	<u>국</u> 내지사의
장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와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授受)(<u>사무소를</u> 유지	<u>국내지사</u>
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나	르 <u>핃</u>
경상적 거래와 관련된 자	
금의 수수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20. (생 략) <신 설>

<신 설>

- ② (생 략)
-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② (생 략)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필요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환

- 20. (현행과 같음)
- 21.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 자산을 말한다. 가상자산의 종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22. "가상자산사업자"란「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가 상자산 관련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1)
・② (현행과 같음	(-)		
③			

<u> </u>
,
외국환업무의

업무의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
 의 매입
-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

 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 3.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

④ ~ ⑦ (생 략) <신 설>

_							
_		- .					
1.							
					- <u>여행</u> ス	<u> </u>	丑
	의	매입(디	구만,	제:	3호에	해대	당
	<u>하</u> 지] 않는	경우	-에	한한디	<u>})</u>	
<	(삭	제>					

- 3. 전자적 방법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를 위한 지급 및 수령, 결제 및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이하 "해외지 급결제업"이라 한다)
 - ④ ~ ⑦ (현행과 같음)
- 제9조의2(가상자산이체업자의 등록 등)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체하는 업(이하 "가상자산이체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이체

<u><신 설></u>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기획 저 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 조 및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있다.

1. ~ 3. (생 략)

업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변경하려 하거나 가상자산
이체업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4(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 제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
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
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 4. <u>제8조제2항을</u> 위반하여 외국 환업무를 한 경우
- 5. 제8조제4항 또는 <u>제9조제3항</u>
 <u>에</u>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5의2. ~ 14. (생 략) <신 설>

② ~ ⑤ (생 략) 제20조(보고·검사) ① ~ ⑤ (생 후 략)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하여금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할 수 있다.

4. <u>제8소제2항 보는 제3항을</u>
5 <u>제</u> 9조제3항, <u>제</u> 9조의2제2항에
5의2. ~ 14. (현행과 같음)
15.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
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
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
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u>경우</u>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보고·검사) ① ~ ⑤ (현
행과 같음)
6
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총재

⑦ (생략)

제21조(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①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지급, 수령, 자금의 이동 등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직접 통보하거나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장, 세관의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통보하도록할수있다.

② (생략)

제22조(<u>외국환거래의</u> 비밀보장) 지 (생 략)

제25조(사무처리 등) ① (생 략) 지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 ①
<u>,</u> 가상자산의 이체 등
<u>에</u> 금융위원회 위
원장, 국세청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세청
장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u>외국환거래 등의</u> 비밀보
장)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u>o</u>
제25조(사무처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하나 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외국환거래, 지급 또는 수령에 관한 자료를 중계·집중·교환 또는 분석하는 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 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 하로 한다.

1.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u>수령, 가상자산 이체에</u>
제27조의2(벌칙) ①
1
<u>제3항, 제9조의2제1항에</u>
이그처어만 ㅠㄴ
<u>외국환업무 또는</u>
<u>가상자산이체업을제8</u>
조제4항 또는 제9조의2제2항
에

<u>외국환업무</u>
또는 가상자산이체업을

2. · 3. (생략)

② (생략)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1. ~ 6. (생 략) <u><신 설></u>

②・③ (생략)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의국환업무 또는
가상자산이체업을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벌칙) ①
<u>.</u>
1. ~ 6. (현행과 같음)
7.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
적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
• 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
시킨 자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과태료) ①

과한다. 다만, 제29조에 해당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u>제8조제4항에</u> 따른 변경신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u>외국환업무</u> 를 한 자
- 2. ~ 6. (생략)
- ② ~ ⑤ (생 략)

1. 제8조제4항 또는 제9조의2제
2항에
<u>외국환업무 또는 가</u>
<u>상자산이체업을</u>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